



Korea Solar Construction Association

사단  
법인 **한국태양광공사협회**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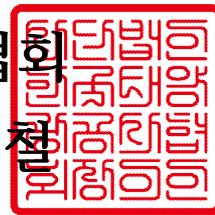
수 신 자 (사)한국태양광공사협회 회원  
(경 유)  
제 목 한국태양광공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

---

협회 정관 제13조(임원의 선출)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 3 조  
(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)에 따라 첨부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·공고  
하오니 회원님들께서는 선거관련 문의사항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경우 협회  
사무국(043-238-3266)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: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 1부. 끝

(사)한국태양광공사협회  
회 장 박 동 철



---

담당 : 장형욱 과장

상근부회장 : 이재우

시행 : KSCA-2024-15 (2024-9-26)

우 2816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3로 65-15 601호

전화 (043) 238-3266 / 팩스 (043) 238-3267 / E-mail : janghukk@naver.com

---

# 한국태양광공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

2024년도 한국태양광공사협회 수석부회장(회장)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위	원	강 기 환
위	원	김 의 경
위	원	김 성 수
위	원	신 동 윤
위	원	고 석 환
위	원	안 재 환
위	원	이 승 욱

\* 위원장, 부위원장, 간사는 추후 선거일정 및 투표장소 등 선거공고와 함께 게시될 예정입니다.

2024년 9월 26일

한국태양광공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

##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근거 및 일정

### □ 선거관리위원회 구성

#### ○ 관련근거

- 정관 제13조(임원의 선출)②사무국은 임원의 임기 60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지하여야 한다.
-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 3 조(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) ① 협회는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협회 정회원과 외부위원(학계, 언론계, 법조계 등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)으로 구성한다.

#### ○ 선거관리위원 구성 : 7명(외부위원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)

- 협회회원 2명(안재환, 이승욱)
- 외부위원 5명(강기환, 김의경, 김성수, 신동윤, 고석환)

#### ○ 위원회의 업무

- 선거일정 공고
- 선거인의 확정
- 후보자등록 접수 및 공고
- 후보자의 등록,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
-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열람,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
-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

- 참관인등록에 관한 사항
- 입후보자 당선확정의 공고
- 제출된 수석부회장의 차기 회장 결격사유 검정
-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·경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
-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

○ 위원회 조직

- 위원장 1명
- 위부위원장 1명
- 간사 1명

○ 위 원 임 기 : 수석부회장 취임과 동시 종료(24. 12. 31)

○ 위원회 장소 : 협회 사무국

# 수석부회장(회장) 선거관련 일정

날 짜	일정명	기한일	정관 규정	선거관리규정
2024-09-24	이사회 선거관리위원위 촉			제 3 조(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)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고, 위원 장및부위원장,간사는위원 중에서호선한다
2024-09-26	선관위 구성	임원의 임기 60일전	사무국은 임원의 임기 60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지	제 3 조(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)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
2024-10-07	선관위 제1차 회의 선거일 공고 (11월29일)			위원장 및 부위원장,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 13조3항 동시안내
2024-10-10 ~10-14	선거인명부 열람	선거일을 공고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작성하여 3일간 공고		제9조(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열람)③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3일로 한다. ⑤선거인명부에 착오·누락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
2024-10-15	수석부회장 부적격 의견제출, 수석부회장 희망사퇴 제출 마감일	선거일 45일 전	제13조③항 수석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회원은 회원 1/3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거 45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, 수석부회장 본인도 회장 선임 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선거 45일전 사퇴	제10조(후보자의 자격)②선거관리위원회 에 의해 현재의 부회장이 회장자격이 부적격으로 결정 되거나 현재의 수석부회장이 회장 선임 을 원하지 않을 경우 회장 및 수석 부회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
2024-10-16 ~10-17	수석부회장의 회장 결격사유 검정(선거관리위 원회)	2일간 검정	수석부회장의 회장 결격사유 검정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시 안내,언제까지 통보후 공지할 것인지도 공고내용에 포함	제7조(위원회의 업무) 9.제출된 수석부회장의 차기 회장 결격사유 검정
2024-10-17	선관위 제2차 회의		수석부회장의 차기 회장 결격사유 검정	
2024-10-18	수석부회장의 회장 결격사유 검정결과 통보			<수석부회장의 차기 회장 결격사유 검정결과 통보>

날 짜	일정명	기한일	정관 규정	선거관리규정
2024-10-22 ~10-28	후보자 등록 기한 (10/22~10/28:7일)	선거일 30일 전	출마후보는 선거 3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	제11조(후보자 등록)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 3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(별지2호서식)
2024-11-01	후보자 등록 공고 (후보자번호 호추첨)			제13조(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)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·사퇴·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[별지 제5호서식] 제21조(투표용지)③ 후보자 게재 순서 등을 위한 후보자 번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 추첨으로 결정한다.
2024-11-01 ~11-28	선거운동기 간(11/1~11/28)			제17조(선거운동 기간)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공고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하며
2024-11-28	투표소 설치			제20조(투표소의 설치 등)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.
2024-11-29	선거일 (총회)	기준일(임 원 임기만료 30일전 임의날짜 지정)	회장, 수석부회장 선출후 회장이 감사, 부회장, 이사 추천후, 총회승인	
2024-11-29	당선인 공고			제28조(당선인 공고)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즉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고
2024-11-30	신규임원 선출 기한 일	임원임기 만료 30일 전		
2024-12-03	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	선거일부터 5일 이내		제24조(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)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(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)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날 짜	일정명	기한일	정관 규정	선거관리규정
2024-12-10	이사회 추천자 투표	이사회는 10일 이내에 다른 후보 1인을 추천하고 선거인단의 과반수이상의 투표		제26조(당선인 결정)③제2항에서 후보자가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이사회는 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후보 1인을 추천하고 선거인단의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선정 한다
2024-12-13	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 결정 통지	이의신청 접수일부터 10일 이내		제24조(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)③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·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인과 관계인을 불러 소견을 들은 후 기각 또는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
2024-12-31	임원 임기 만료일			

## 임원의 선출 일정

**제13조(임원의 선출)** ①본회의 임원은 제6조에 의한 회원이어야 하며,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당연직 회장으로 추대되고, 부회장, 이사 및 감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.

②사무국은 임원의 임기 60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지하여야 한다. 수석부회장 출마후보는 선거 3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고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·비밀선거에 의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며, 최다득표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최고 연장자를 당선자로 선출한다.

③수석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회원은 회원 1/3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거 45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회장자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. 또한 수석부회장 본인도 회장 선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선거 45일전에 사퇴할 수 있다.

④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자격이 부적격으로 결정되거나 수석부회장이 회장 선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즉시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를 공고하고, 회장 및 수석부회장 출마후보는 선거 3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하며, 총회에서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선출한다.

⑤상근부회장은 회원이 아닌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.

⑥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3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.

⑦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⑧임원중 상근부회장은 본회의 사업목적과 관련한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 할 수 없다.

⑨임원의 취임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제21조(구분 및 소집)

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